

공정거래법 심결사례 해설 및 평석

이 기 수 / 고려대 법대 교수

프록터 앤드 갬블 지엠비에이치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998. 5. 23.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8-84호 / 사건번호 9801기결0063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프록터 앤드 갬블 지엠비에이치 : Procter & Gamble GmbH)은 1997. 11. 6. 쌍용그룹으로부터 쌍용제지(주)에 대한 보유지분 24.99%를, 1997. 11. 29. 공개매수분 59.4%를 각각 취득하여 1997. 12. 5. 쌍용제지(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84.39%를 취득하였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그 후에도 피심인은 잔여주식을 계속 취득하여 1997. 12. 27. 기준으로 위 발행주식의 91.6%를 보유하고 있다.

일정한 거래분야

1. 이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의 효과가 문제되는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는 동종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간에 상호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종이생리대 국내시장으로 확정한다.
2. 종이생리대 국내시장현황을 보면 1996년 기준 2,063억원 규모로 한국피앤지(주)와 유한킴벌리(주), 쌍용제지(주)로 이루어지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인 3개사와 대한펄프(주)가 경쟁하고 있다.
3. 국내시장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저연령층의 수요증가로 1995년 1,876억원에서 1996년 2,063억원(전년대비 10.0% 증가), 1997년 2,269억원 추정(전년대비 9.9% 증가)으로 시장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96년의 수급구조를 보면 국내수요 2,063억원에 대해 국내생산 99.7%, 수입 0.3%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고, 수입 비중은 국내경쟁에 대한 영향이 극히 미미하고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4. 세계시장은 P&G와 킴벌리클락(Kimberly-Clark)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으며, 유니참(주)가 일본·동남아시아에서 유력한 사업자이다. 그 외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이 북미·유럽·동남아시아 등에서 경쟁에 참여중이며, 국내에는 자회사인 (주)한국존슨앤드존슨이 설립되어 있으나 국내생리대시장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1. 시장의 집중

- 1)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1996년 시장지배적사업자 조사자료로 63.8%에 해당하여 당해 거래분야에서 1위이며, 2위와의 격차가 42.0%로 당사회사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이어서, 공정거래법 제7조제4항제

1호에 해당되므로 위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2)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경쟁력있는 시장지배적사업자 1개사가 퇴출되어 한국피앤지(주)와 함께 실질적인 복점시장체제를 구축하게 되고,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시장집중지수인 HHI[Herfindal-Hirshman Index]가 1,561 증가하여 시장지배력의 행사가 더욱 용이해졌다.

2. 신규사업자의 진입곤란

- 1) 종이생리대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조하려면 높은 기술과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다. 더욱이 최근에는 종이생리대 분야는 제품수명주기가 2~3년 정도로 짧아지는 추세에 있음에 따라 신제품개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기존사업자의 기술은 피심인의 모회사인 P&G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특허만도 300건 이상, 2위사업자인 유한킴벌리(주)의 모회사인 킴벌리클락은 미국 특허가 400건 이상에 이를 정도로 축적되어 있다. 또 기존사업자는 제조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평균 2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현재 기존사업자의 경우 1996년을 기준으로 매출액대비 약 5~12%에 해당하는 광고·판촉비를 사용하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할 때 인지도가 없는 관계로 그 진입을 위하여는 기존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판촉·광고활동을 해야 할 신규사업자로서는 치러야 할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인지도 구축에 드는 시간도 적지 않을 것이다.
- 2) 생리대 시장진입은 단순히 제조능력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조업체로부터 독립된 전국적 규모의 유통업이 발전하지 않은 국내시장상황하에서는 제조업자의 독자적 유통망 구축이 불가피하게 요청된다. 현재 기존업자는 개설에 1 내지 4억원 상당의 부동산담보가 필요한 대리점을 50개 내지 140개 가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기업인지도가 낮은 신규사업자로서는 이러한 대리점개설을 통한 독자적 유통망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 3) 대부분의 원재료제조업체는 제품특징 등에 따라 기존 생리대제조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규진입자의 경우 원재료공급처를 새로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3. 경쟁제한적 효과

이 사건 기업결합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추정되는 점, 시장집중지수가 크게 증가하여 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이 형성 강화되는 점,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곤란한 점, 그리고 종이생리대의 해외수입비중(0.3%)도 작아 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고, 조만간 해외수입의 급격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4. 예외인정가능성 여부

1) 산업합리화를 위한 기업결합여부

공정거래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기업결합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산업합리화라 함은 기업결합의 제한제도의 취지, 공업발전법 등 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제7조제2항에서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원칙적으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그 산업전체를 대상으로 산업구조고도화의 촉진, 기술 및 생산성

의 향상,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 등 산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을 개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기업결합은 종이생리대 등의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1개 기업이 경쟁기업을 인수하여 당해기업의 지배구조가 개편된 것에 불과하고, 산업정책차원에서 산업합리화를 위한 기업결합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시행령 각호에 규정한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볼 필요 없이 공정거래법 제7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기업결합제한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

2)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여부

공정거래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기업결합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기업결합이라 함은 기술개발의 촉진, 적정경영규모의 확보 등으로 가격 및 품질면에서 현저하게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경우나 해외시장에서 정보수집, 판매활동 등 기업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수출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경우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업결합에서는 이를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및 주문

피심인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므로, 공정거래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주문 1.

가. 피심인은 쌍용제지(주)의 종이생리대영업과 관련된 기계설비일체 및 산업재산권(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피심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나.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제1항의 시정명령 중 기계설비일체 양도명령을, 다음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시정명령 중 산업재산권양도명령을 각각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피심인이 위 기계설비일체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2) 피심인이 위 산업재산권을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등록포기하거나 출원취하하고 포기 또는 취하한 날부터 10년간 동일한 산업재산권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10년간 직접 사용·실시하지 않음과 동시에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실시토록 하지 않는 경우

다. 위 나. (2)의 경우에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매 6개월마다 산업재산권의 등록 또는 출원현황을 보고하거나, 동 산업재산권을 사용·실시하지 않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문 2.

피심인은 자신이 인수한 쌍용제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쌍용유니참(주)의 주식(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5)을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피심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쌍용제지(주)와 유니참(주)와의 합작투자계약서에 의한 합작계약이 해지되어 쌍용유니언(주)가 해산할 때에는 동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해설 및 평석

1. 머리말

독과점의 폐해를 시정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한다는 공정거래법의 목적¹⁾이 가장 적절히 적용되는 분야가 기업결합분야이다. 이 글에서 검토하는 사건은 바로 관련시장으로 종이생리대 국내시장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 기업결합여부가 문제되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기업결합의 의의와 종류, 1996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시의 기업결합규제부분의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결론 부분에서 1998년 2월의 공정거래법의 타 부분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결말을 짓는다.

2. 기업결합의 의의

기업결합이란 기업간의 자본적·인적·조직적인 결부를 통하여 기업활동을 단일한 관리체제하에 통합시킴으로써, 개별기업의 경제적인 독립성을 소멸시키는 기업간의 결합의 과정과 형태를 말한다.²⁾ 말하자면 둘 이상의 기업이 단일한 지휘(경영)체제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을 말한다.³⁾ 따라서 합병, 지분참가 또는 임원과견 등을 통하여 여러 기업이 통일적인 지배하의 경영이 이루어지면 기업결합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드시 이들 지배하에 있는 기업들이 법률적으로 별도의 법인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3. 기업결합의 유형

기업결합은 분류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시장의 효과에 따라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으로 나눌 수 있고, 기업결합의 방법 및 수단에 따라 주식 또는 자산취득, 임원겸임, 영업양수,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 참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 기업결합의 내부조직에 따라 지주회사, 트러스트, 콘체른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⁴⁾

(1) 전형적인 강화상의 분류 :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

A. 수평결합(Horizontal Intergration)

수평결합은 동일한 시장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기업이 수평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끼리 결합하는 것이 예이다. 이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체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경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B. 수직결합(Vertical Integration)

이는 생산자와 도·소매업자와 같이 동종산업에 속하지만 거래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간의 결합을 말한다. 예컨대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자동차부품생산회사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수평적 결합과는 달

1)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1997, 21, 29쪽.
 2)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1997, 85쪽 ; 손주찬, 경제법, 법경출판사, 1994, 78쪽.
 3) 황적인·권오승, 경제법, 5정판, 1996, 125쪽.
 4) 황적인·권오승, 경제법, 5정판, 1996, 127쪽.

리 경쟁자의 수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효과가 불분명하다.

수직적 결합의 목적은 구매 및 판매비용을 절감하고 원료 등의 확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생산성과 경영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경쟁의 저해성은 크지 않으나, 수직적 결합으로 인하여 원료나 판매경로를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다른 사업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경우에는 경쟁저해성은 크게 된다.

C. 혼합결합

혼합결합(Conglomerate Intergration, 복합결합)이란 자동차회사와 호텔사업자의 결합과 같이 경쟁관계나 거래관계가 없는 기업간의 결합을 말하며 이는 다시 상품확대형, 시장확대형 및 순수형 세가지로 나뉜다.

- a) **상품확대형 혼합결합** : 콜라와 맥주생산업체와 같이 서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생산공정이 나 판매조직 등에서 상호관련성을 갖고 있는 기업간의 결합
- b) **시장확대형 혼합결합** : 서울의 백화점과 부산의 백화점의 결합과 같이 시장의 영역이 다른 사업자끼리의 결합
- c) **순수형 혼합결합** : 상품확대형도 아니고 시장확대형도 아닌 경우로서, 자동차회사와 식품회사의 결합이 그러한 예이다.

(2) 내부관계의 성질에 따른 분류

- A. **카르텔** : 일명 “공동행위”라고도 하며, 둘 이상의 기업이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통제할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매조건 등에 관하여 협정을 맺고 동일산업분야에서 공동행위를 하는 것. 기업결합력은 약하지만 결합의 형성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법상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한다.
- B. **트러스트** : 둘 이상의 기업이 특정시장을 지배할 목적으로 경제적·법률적으로 통합되는 가장 강력한 기업 결합형식이다. 우리법상으로는 이를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결합”으로 규제한다.
- C. **콘체른** : 각 기업이 법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단일의 경영지배체제하에 편입되는 결합의 형태로서 이는 우리 나라의 재벌에 해당한다. 우리법상으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의 금지 등의 방식으로 규제한다.

(3)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유형(제7조)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⁵⁾

- A.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 B. 임원의 겸임 [임원의 정의는 제2조제5호(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등)]
- C. 합병
- D.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E. 회사의 신설에의 참여

4. 기업결합의 제한

기업결합의 제한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1996. 12. 30. 법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⁶⁾

5)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1997, 88쪽 아래; 황적인·권오승, 경제법, 5정판, 1996, 128쪽 아래.

6)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1997, 37쪽 아래 참조.

1) 기업결합제한범위의 확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제한제도는 법제정 이후에 제도의 보완이나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경제현실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경쟁제한적이거나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 기업결합으로는 대기업들이 혼합결합을 통해서 중소기업분야에 진출하여 시장을 지배하거나, 대규모기업집단들이 소속 금융·보험 계열회사를 이용해서 계열기업을 확대시켜 나간다가나, 대규모기업집단들이 소속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협력회사 등을 동원하여 기업결합을 시도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1996. 12. 30. 기업결합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과거에는 일정규모 이상(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인 기업간의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금지시켜 왔으나, 1996년 12월 개정법률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하지 못하도록 그 규제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법 제7조). 또한, 과거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더라도 규제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1996년 12월 개정법률에서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당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상위에 있는 기업간에 기업결합을 한다든가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가 중소기업들이 3분의 2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거래분야에서 기업결합을 통해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이른바 추정조항을 신설하였다.

2) 기업결합신고 대상의 합리적 조정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은 누구든지 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되, 기업의 인수·합병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계의 부담을 줄여야 하였다. 기업결합심사처리건수는 1994년에 195건, 1995년에 325건, 1996년에 393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기업결합 심사업무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결합신고는 일정규모(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 이를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함)이상인 회사만 하도록 그 범위를 축소시켰다. 다만, 기업결합중 주식취득의 경우에 상장법인인 때에는 신고대상 주식취득비율을 15%로 하향조정(과거에는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20% 이상 주식취득시 기업결합신고의무 발생)하였다. 그리고 기업결합신고는 원칙적으로 사후신고제로 전환하되, 예외적으로 대규모회사 또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수 및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등의 형태로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법 제12조).

이와 같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를 축소시키고 사후신고제로 전환함에 따라 대규모회사 또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미리 당해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율적으로 심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요청제도를 신설하였다(법 제12조제6항).

3) 기타

1996. 12. 30. 개정법률에서는 기업결합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업결합 및 경제력집중억제 관련 규정을 면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5. 경쟁저해성 심사

1) 시장의 확정 = “일정한 거래분야”

공정거래법 제2조제8호에 의하면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우선, 거래의 객체별로 경쟁관계가 성립하는 지를 판단하고, 이를 다시 한정할 필요가 있을 때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⁷⁾ 그리고 거래의 객체별 경쟁관계의 성립여부는 상품의 동질성 또는 유사성이 기준이 된다.⁸⁾

2) 실질적 경쟁저해(제한) 여부의 심사

A. 기준

실질적으로 경쟁의 제한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은 재량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이다.⁹⁾ 이 때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기업결합대상기업이 그 시장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고, 시장집중도라 함은 그 시장이 몇 개의 기업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지, 즉 시장의 독과점 여부 및 독과점 정도를 말한다. 그밖에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의 난이도, 경제력집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위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심사한다. 이 말은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기대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 즉 시장이 이들 결합기업에 의하여 지배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6. 기업결합금지의 예외(법 제7조제1항 단서;시행령 제13조, 제14조)¹⁰⁾

1) 공정거래법상의 예외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한다.¹¹⁾

2) 공업발전법에 따른 특례

공업발전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국제경쟁력의 확보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곤란한 업종을 사업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공업발전법 제5조).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된 때에는 업종별로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소위 업종별 합리화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에는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등 사업제휴(기업결합)와 공동행위 등도 포함

7) 손주찬, 경제법, 법경출판사, 1994, 90쪽.

8)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1997, 86쪽.

9) 손주찬, 경제법, 법경출판사, 1994, 91쪽.

10)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1997, 92쪽.

11) 손주찬, 경제법, 법경출판사, 1994, 107쪽 아래 참조.

된다. 이 때 산업자원부장관은 업종별 합리화계획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합리화사업자에게 필요한 권고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공업발전법 제6조). 이와 같이 업종별 합리화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기업결합과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공업발전법 제26조제1항).

7. 맺음말

IMF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종래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이 행하여지는 가운데 경제법 및 기업관계법의 영역에서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기업구조의 선진화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요구되었다. 또한 외국자본의 국내유입 촉진을 위하여 자본시장의 개방과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의 허용 등이 불가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법의 영역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였다. 그리하여 회사법과 경제법의 영역에서는 상법중 회사편의 개정이 1998년 6,7월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 등이 1997년 말과 1998년 상반기에 걸쳐 여러 번 개정되었다. 또한 은행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많은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우리나라의 경제법관계 제도에 대하여 많은 변경을 가져다 주었다. 특히 기업결합과 관련하여서는 외국인의 기업매수합병을 허용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우선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던 출자총액제한(당해회사 순자산의 25% 이내)제도를 폐지하였다. 이것은 기업집단이 더이상 무분별한 사업다각화를 꾀할 수 없도록 기업환경이 바뀌어 이를 유지할 실익이 없고 도리어 외국기업에 대하여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IMF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계열회사간의 상호채무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하고, 기존의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2000년 3월말까지 완전 해소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기업결합과 관련한 최근의 개정은 1996. 12. 30. 개정이후에는 없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외국인의 M&A를 허용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법률인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규제는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는 법률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그 정당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IMF사태가 기업결합규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실기업의 인수를 쉽게 하기 위하여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독과점 우려가 있다라도 기업인수·합병이 허용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아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이 우려되는 기업결합을 1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사의 합계가 70% 이상인 기업결합으로 하고 이에 저촉되는 기업결합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실기업인수 등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두게 된다.¹²⁾

冒頭の 기업결합규제에 대한 심결례에서는 관련시장으로 동종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간에 상호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종이생리대 국내시장에서 피심인이 타회사의 발행주식의 91.6%를 취득·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시장의 신규진입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와 기업결합규제의 대상이 되고 또 산업합리화 및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당화 사유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시정조치를 내렸다. 기업결합의 허용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의 확정과 경쟁제한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도 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타당하다. ■

12) 한국경제신문 1998년 6월 10일, 1면.